

외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현황 및 시사점

- 현재 담배포장의 건강 경고그림은 27개 국가에서 시행되며,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 담배포장의 건강 경고그림은 매우 효과적인 비흡연수단임. 담배포장의 건강경고그림을 통하여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고, 금연에 대한 상담률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흡연을 저하에 효과적으로 기여함

-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적인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효과적인 건강경고그림의 도입이 시급함

1.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 경향

□ 담배 건강경고그림은 캐나다에서 2001년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담배에 의한 사망과 질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실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이 2003년 채택되고, 2005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담배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되었음

□ 2000년 캐나다에서 담배포장지에 건강경고그림을 넣기 시작한 이후 2010년 27개국이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함.¹⁾ 현재 약 7억 명, 전체인구의 10.18%가²⁾ 건강경고그림을 접함

○ 2010년 현재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베네수엘라, 요르단, 호주, 우루과이, 파나마, 벨기에, 칠레, 중국(홍콩 특구), 뉴질랜드, 루마니아, 영국, 브루나이, 이집트, 쿡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키르기스스탄, 지부티, 라트비아, 스위스의 27개국임

·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싱가포르(2004년 도입), 태국(2005년 도입), 호주(2006년 도입), 중국(홍콩특구, 2007년 도입), 뉴질랜드(2008년 도입)의 5개국이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하였음

○ 담배포장지 건강경고그림은 담배생산품정보규제(캐나다), 담배규제(싱가포르), 담배광고 및 라벨에 관한 법(요르단)등 주로 담배제품의 규제법에서 다룸

1)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Physician's smoke-free Canada <http://www.smoke-free.ca/warnings/>; Picture Based Cigarette Warnings(<http://www.smoke-free.ca/warnings/default.htm>) ;Canadian Cancer Society, International Status Report: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2008

2)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yb2006.htm> (2009.4.2)

- 각 국에서는 건강경고그림을 담배 포장지의 평균 21~60%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7개국 중 21개국이 평균 50%이상의 면적을 차지함. 한편 보다는 양면에 위치하도록 규정한 국가가 다수임. 건강경고그림 포함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로 60%임. 반면에 가장 좁은 국가는 페루로 25%임
- 건강경고그림의 종류는 최대 42개이며, 대다수 국가에서 이를 순환하여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표 1] 외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제도개요

국가	도입연도	면적			위치	그림수	순환여부
		평균	앞면	뒷면			
캐나다	2001	50	50	50	상단	16	X
브라질	2002	50	0	100	앞/뒤	10	O
싱가포르	2004	50	50	50	상단	6	O
태국	2005	50	50	50	상단	9	O
베네수엘라	2005	50	0	100	앞/뒤	10	O
요르단	2005	30	30	30	하단	1	X
호주	2006	60	30	90	상단	14	O
우루과이	2006	50	50	50	하단	5	O
파나마	2006	50	50	50	-	5	O
벨기에	2006	43	35	50	하단	16	O
칠레	2006	50	50	50	-	1	X
중국(홍콩 특구)	2007	50	50	50	상단	6	O
뉴질랜드	2008	60	30	90	상단	14	O
루마니아	2008	35	30	40	-	16	O
영국	2008	35	30	40	-	16	O
브루나이	2008	50	50	50	상단	6	O
이집트	2008	50	50	50	-	11	O
말레이시아	2008	50	40	60	-	6	O
인도	2008	40	40	40	-	3	O
페루	2008	25	0	50	-	11	X
이란	2009	50	50	50	-	10	O
스위스	2010	56	48	63	-	42	O

출처: 1)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09
 2) Physician's smoke-free Canada <http://www.smoke-free.ca/warnings/>
 3) Picture Based Cigarette Warnings (<http://www.smoke-free.ca/warnings/default.htm>)
 4) Canadian Cancer Society, International Status Report: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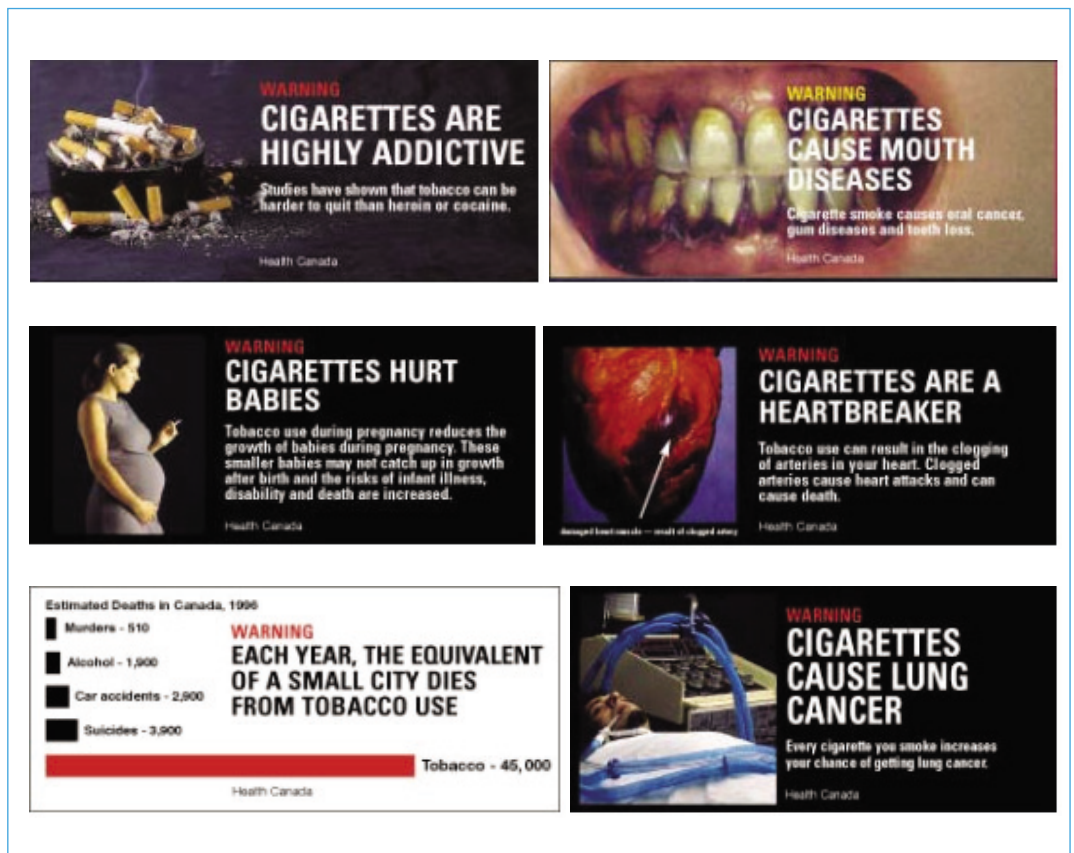
2. 주요국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현황 및 효과

□ 캐나다³⁾

○담배법(The Tobacco Act,1997)을 근거로 2000년 담배생산품정보규제(The 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SOR/2000-272)를 도입하였고, 2001년부터 이 법을 실행하였음. 이 법에 따라 담배의 포장지에는 건강경고그림, 금연메시지, 독성물질 방출 및 성분 관련 설명문구의 3가지 요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음

- 이중 건강경고그림은 주 표적집단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청소년, 담배 중독자, 금연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 적합한 맞춤 그림건강경고를 개발하였음
- 건강경고그림 표시 면적은 시가, 파이프 담배, 물담배와 무연담배에는 30% 이상, 일반담배는 담배갑 포장지의 5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림 1] 캐나다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사례



³⁾ http://www.hc-sc.gc.ca/hl-vs/tobac-tabac/legislation/label-etiquette/index_e.html;
<http://laws.justice.gc.ca/en/ShowFullDoc/cr/SOR-2000-272//en>

○ 경고그림의 효과

- 인지도 : 청소년 흡연자 80%가 일주에 1회 이상 건강경고를 접하고, 성인흡연자는 66% 정도가 접함. 반면에 경고그림문구를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한 경우는 성인흡연자의 13%, 청소년흡연자의 21%이었음
- 지식 : 성인흡연자 10명 중 7명 이상,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9명이 건강경고를 통해 담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 흡연율의 변화 : 흡연 경고그림제 도입직전인 2000년의 흡연율은 전체 24%였으며, 15~19세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25%였으나,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 청소년 22.5%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감소함

[표 2] 캐나다의 성인 및 청소년의 흡연율의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5%	24%	22%	21%	21%	20%	19%	18%
청소년(15-19세)	28%	25%	22.5%	22%	18%	18%	18%	16%

자료: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1999-2006)

출처: Health Canada Website (http://www.hc-sc.gc.ca/hl-vs/index_e.html)

□ 브라질⁴⁾

- 2002년 2월부터 건강그림경고를 도입하여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한 면에 100% 건강경고 메시지를 표기하도록 하였음. 2002년 2~6월의 1차시기에는 9개의 건강경고그림 메시지를 담배갑 하단에 표기하였고, 2004년 7월에 시작된 2차시기에는 “흡연은 이러한 피사를 일으킵니다.”, “흡연은 후두암을 일으킵니다”, “흡연할 때 쥐약이나 바퀴벌레 또는 살충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와 나프탈렌을 흡입하게 됩니다” 등 담배의 건강상의 폐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대한 10개의 건강경고그림을 표기함

4) Brazil,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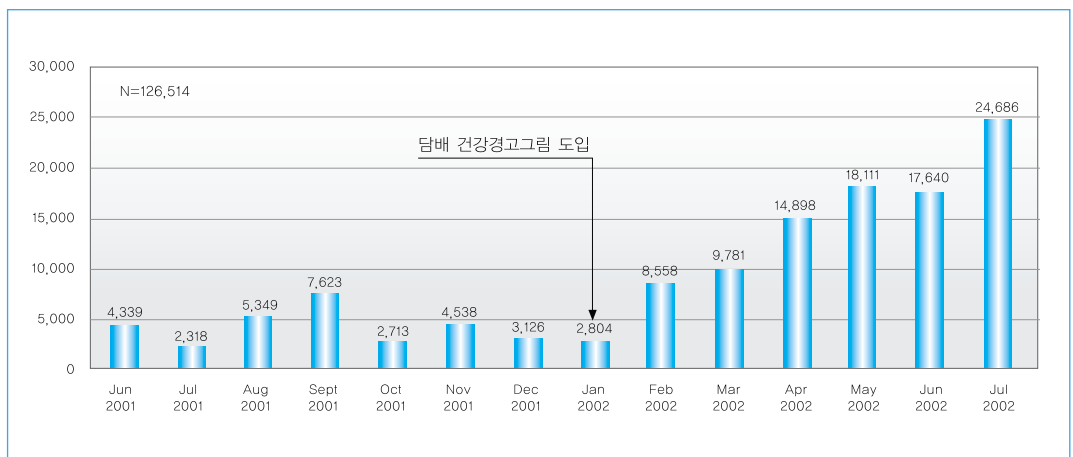
[그림 2] 브라질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사례



○ 경고그림의 효과

- 2001년 건강경고그림 표기를 도입한 후 건강경고그림 실행 전과 후의 결과를 126개 지역의 18세 이상 2,216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교함
- 금연효과 : 6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함. 흡연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흡연자의 73%는 새로운 경고그림이 금연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함
- 금연상담의 증가 : 담배갑에 금연상담 전화번호 인쇄 후 상담전화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 상담전화 사용자 32,664명 중 92.62%가 담배갑을 통하여 상담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그림 3] 브라질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 전후의 금연콜센터 이용 건수 추이



자료: Labelling and Packaging in Brazil, Tania Maria Cavalcante, National Cancer Institute, Health Ministry of Brazil,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 흡연을 저하효과 : 경고그림 도입 이전인 1989년 및 2000년의 성인흡연율이 각각 34.8%, 31.0%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인 2003년 성인흡연율은 22.4%로 크게 감소함

[표 3] 브라질의 성인 흡연율의 변화 추이

연도	1989 ¹⁾	2000 ²⁾	2003 ¹⁾
전체	34.8%	31.0%	22.4%
남자	43.3%	35.4%	27.1%
여자	27.0%	26.9%	18.4%

자료: 1) Population-based evidence of a strong decline in the prevalence of smokers in Brazil(1989- 2003), WHO(2007)

2)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American Cancer Society(2003)

출처: <http://www.inca.gov.br/index.asp>

□ 싱가포르⁵⁾

○ 2004년 7월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한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6개의 그림경고 메시지에서 1개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림경고 메시지는 담배갑의 앞과 뒤 각각 50%를 차지해야 함. 2006년 6개의 그림경고를 개발하였고, 2006년 10월 순환을 위해 6개의 새로운 경고그림이 개발되었음

○ 흡연을 감소효과 : 1998년에 15.2%였던 성인흡연율(18-69세)은 경고그림이 도입된 해인 2004년 12.6%로 하락함

□ 호주

○ 2006년 3월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하여, 7개의 그림 경고가 있는 2개의 세트를 개발하여 매년 순환하여 사용함. 경고그림은 담배갑 앞면의 30%, 뒷면의 90%를 차지하고, 상위에 위치하도록 함

○ 금연유도효과 : 경고그림에 금연상담안내를 한 결과 2006년 1차 그림경고 표기 후 금연상담전화 수는 2005년 80,000통에서 2006년 165,000통으로 2배 이상 증가함⁶⁾

5) National Health Survey, 2004

[그림 4] 호주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사례



3. 담배 건강경고그림 도입의 시사점

- 이미 담배 건강경고그림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흡연자의 금연유도 효과를 보이고 있어, 경고그림 도입국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각 국에서는 건강경고그림을 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대다수임. 최대 42개의 그림경고를 만들어 이를 순환하여 담배포장지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을 수정 보완 할 의무가 있는 국가임.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아직 담배 건강경고그림을 도입하지 못하고, 담배경고문구를 담배포장지의 앞뒷면 각각 30%를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임. 향후 적극적인 경고그림의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11조(Article 11)에서 담배제품에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describing) 건강경고를 실을 것을 요청하며, 경고문구를 전달하는 형식에 있어 사진이나 그림 형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며,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크기를 원칙적으로 각각 앞면과 뒷면에 50% 이상 최소한 30% 이상을 권고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아직 건강경고그림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강경고문구에 있어서도, 표시면적이 30%에 그침. 따라서 건강경고그림의 도입과 표시면적의 확대 논의가 필요함

6) Dept. of Health and Ageing, "Look, see, quit: new images to shock smokers," 1 March 2007, media release, <http://www.health.gov.au/>

[표 4] 담배규제기본협약과 우리나라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주요조항 비교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경고그림 관련조항	우리나라의 담배 건강경고그림 관련법
문구의 교체	-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15조2항)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 표기방법 :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 글자체: 고딕체 - 표시위치 :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1,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4) - 경고문구내용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1. 나프틸아민, 2. 니켈, 3. 벤젠, 4. 비닐 크롤라이드, 5. 비소, 6. 카드뮴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 차지	-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1, 담배사업법시행규칙별표4)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 가능	- 관련규정없음

서미경(건강증진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3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